

西獨도 '카피' 이용에 요금 부과

黃迪仁 교수, 「저작권 심포지움」에서 서독의 부과금제도 밝혀

'카피 公害' 방지와 '출판자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처리기구로서 '복사권센터'를 설립하려는 일본 출판계의 움직임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西獨에서도 지난 85년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카피의 이용은 물론 복사기 운용자에게도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이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14~15일 도고호텔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장인숙) 주최로 열린 '저작권전문가 심포지움'에서 「서독의 부과금제도」란 주제를 발표한 黃迪仁 교수(서울대 법대)에 의해 밝혀졌다. 다음은 발표요지.

합리적인 기준 따라 부과금 징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7호 '私的 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면, "공포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서독 저작권법 제53호 1항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개인적인 용도의 복제가 가능하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출판자 및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서독은 지난 85년도에 개정된 '저작권법'과 '저작권 및 인접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저작권 관리법)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동의가 필요없는 개인적인 복사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독의 부과금제도'를 발표하는 황적인 교수.

있다.

서독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복제에는 ①음악저작물의 圖版에 의한 기록 ②도서 또는 잡지의 전부 ③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복제는, 사적 사용과 기타 개인적 사용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에서 사적 사용이란, 7부 미만의 소수 복제물을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기타 개인적 사용에는 ①개인적인 학술연구목적을 위한 경우 ②개인적인 기록으로 수록하기 위한 경우 ③시사사건에 관한 개인적 정보를 위한 경우 (방송된 저작물에 한함) ④발행된 저작물의 근소한 부분 또는 신문 및 잡지에 발표된 논설 ⑤2년간 절판된 저작물에 대한 복사 등이 포함된다. 신문·잡지에 발표된 논설 등은 반드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더라도 비영리적인 교육 및 재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에서 수업과정상

필요하다면 저작자의 허가가 없더라도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

65년 서독 저작권법이 제정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복사기술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아 복사에 의한 저작권의 피해가 적었으므로, 복사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따라서 85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며 사용료 규정을 명시했다는 점은 그동안 복사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가 크게 늘어났음을 가리킨다.

부과금을 과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저작권 사용료 정수단체로부터 印紙를 받아 복사할 때마다 그것을 복사기에 붙이는 방법, 원문에 다 전자장치를 부착해 복사를 모니터하는 방법, 출판사가 청구에 따라 복사하여 우송하는 방법들이 고려됐다고 하나, 모두 번거롭고 결점이 있어 결국 서독은 복사기와 복사기 운용자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복사기 운용자에도 부과금

먼저 복사기에 대한 부과금은 문헌에 있는 문예저작권관리협회가 복사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생산 및 수입된 복사기가 1분당 몇장을 복사해낼 수 있는가하는 성능에 따라 부과금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1분당 2부~12부를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에는 한대당 75마르크의 부과금이 과해지며, 13~35부 정도를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에는 100마르크가 부과된다. 복사기 제조업체는 제조한 수량과 성능에 관한 자료를 관리협회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수입업자가 복사기를 수입하면 세관에서 관세자료副本을 협회에

우송해주는데 협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금을 매기고 있다.

대학, 학교, 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공공도서관 및 상업적인 복사점에 대해서는 운용자 부과금이 과해진다. 액수는 원문의 A4(크라운 배판) 1면마다 2페니히(한화 7원)씩. 복사기를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은 반드시 문예저작권관리협회에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데, 실제로 독일에서는 복사점마다 복사한 매수를 장부에 기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관리협회가 복사기의 성능에 따라 포괄적으로 부과금 액수를 산정하여 1년마다 정수하고 있다.

상업적인 복사점에 과해지는 부과금 액수는 대학·학교·공공도서관 등의 복사기 운용자에 부과되는 그것보다 2배 정도 많으며, 복사점과 대학간의 거리에 따라 다시 부과금을 ABC급으로 나누어 징수하고 있어 독일적인 합리성을 엿볼 수 있다.

문예저작권관리협회가 걷어들이는 기계부과금 및 운용자 부과금은 1987년 한해에만도 약 1706만 마르크(한화 약 62억원)에 이르는데, 협회는 분배규정에 따라 부과금을 저작자와 출판사에 반반씩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번역물일 경우 저작자는 또다시 번역자와 50%씩 나누며, 저작자는 저술된 책의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분배받는다.

이처럼 복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복제의 남용과 그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있는 서독의 노력은 우리도 눈여겨 봐야 할 점이 아닐 수 없겠다.

— 오애리 기자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 양성!

편집디자인



한국디자인인력양성원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

출판
○단행본 ○전집류 ○잡지
○교양도서 ○참고서 ○사전류
○교과서

신문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

잡지
○교양지 ○전문지 ○종합잡지
○정기간행물 ○사보

1기생 96% 취업 확정
2기생 취업 요청 쇄도

● 취업보도실 : 671-8317